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도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9조제3항제1호 중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위 이하”를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제19조제5항제1호가목 중 “및 소방경”을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3년”을 “2년”으로, “6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위”를 “소방교”로, “2년”을 “1년”으로,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및 소방경”을 “이하 소방장 이상”으로, “3년”을 “2년”으로,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위”를 “소방교”로, “2년”을 “1년”으로, “2회”를 “1회”로 한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	--------	--------

별표 1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를 소방준감 계급의 과장급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 중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경고, 대민불친
 절”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결재문서와 승진대상자명부간 및 승진대상자명부 각 매간에
 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결재문서와 승진제외자명부간 및 승진제외자명부 각 매간에
 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급	기간	월별 점수	기간별 점수			
기 본 경 력	소방정	3년	0.722점	기간 점수	1년 8.66	2년 17.33	3년 26.00
	소방령, 소방정	3년	0.611점	기간 점수	1년 7.33	2년 14.66	3년 22.00
	소방위, 소방장	2년	0.917점	기간 점수	1년 11.00	2년 22.00	
	소방교, 소방사	1년 6개월	1.222점	기간 점수	1년 14.66	1년 6개월 22.00	
초 과 경 력	소방정	2년	0.167점	기간 점수	1년 2.00	2년 4.00	
	소방령	4년	0.062점	기간 점수	1년 0.74	2년 1.49	3년 2.23 4년 3.00
	소방경, 소방위	3년	0.083점	기간 점수	1년 1.00	2년 1.99	3년 3.00
	소방장	1년	0.250점	기간 점수	1년 3.00		
	소방교, 소방사	6개월	0.500점	기간 점수	6개월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② (생략)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 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 정한다. 1. <u>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u> 계 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 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 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 점의 평균 2. <u>소방위 이하</u> 계급의 소방공 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 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u><신 설></u> ④ (생략)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 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u>소방정</u> ----- ----- ----- ----- ----- 2. <u>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u> -- ----- ----- ----- 3. <u>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u> <u>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u> <u>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u> <u>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u>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따라 산정한다.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u>소방령 및 소방경</u>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 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u>소방위</u> 이하 계급의 소방 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 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 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u>소방령 및 소방경</u>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 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 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u>소방위</u> 이하 계급의 소방 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 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 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 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 ⑧ (생략)	----- 1. ----- 가. ---- <u>이하 소방장 이상</u> - ----- ----- 2년 ----- ----- 4회 ----- ----- 나. <u>소방교</u> ----- ----- ----- 1년 ----- ----- 2회 ----- ----- 2. ----- 가. ---- <u>이하 소방장 이상</u> - ----- ----- 2년 ----- ----- - 2회 ----- ----- 나. <u>소방교</u> ----- ----- ----- 1년 ----- ----- 1 회 ----- ⑥ ~ ⑧ (현행과 같음)
---	---